

인천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가단2360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나7722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가단236073 판결

전 문

원 고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

원고보조참가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최의석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진중한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78,840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9.부터 2021.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378,840원 및 그중 3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09,378,8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소송수계 및 참가의 경위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966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 소외 채무자 B(이하 ‘채무자’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하단3577호로 파산이 선고되자 파산관재인이 위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그후 위 사건이 파산계속법원인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소송수계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2. 기초사실

피고는 2018. 1.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외 1필지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신탁자인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제1증여: 인천광역시 서구 I 아파트 J호에 관한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은 채무자의 재산인데, 피고는 위 돈 중 3,400만 원을 채무자로부터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지급하였으므로, 위 증여는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제2증여: 채무자는 2017. 9. 1.부터 2019. 12.까지 K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채무자는 위 재직기간 중 2018. 2.분부터 2019. 12.분까지 22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자신의 처인 피고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가액인 109,378,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되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하거나 다른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제1증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거래가액이 4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 소외 주식회사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위 L에게 채권최고액 327,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갑 제3호증).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을 제7, 15호증), 증인 M 역시 그러한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M의 증언). 또한 피고와 마찬가지로 소외 N, O도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아파트(이 사건 부동산의 평형인 48평형보다 큰 52평형이다)를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을 제1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럼에도 위 각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이 4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제17, 18호증).

③ 인천광역시 서구 I 아파트 J호에 관하여 2016. 1. 10. 체결된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고, 피고는 자신 명의로 P은행에서 1억 3,6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였다(을 제4, 6호증).

(2) 구체적 판단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제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을 은행대출, 피고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인 3,4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증여에 관한 판단

갑 제9, 14, 1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7. 9.

1.부터 2019. 5. 1.까지 K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위 기간 중 2018. 2.분부터 2019. 12.분까지의 22개월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급여 합계액 109,378,840원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채무자는 위 송금행위로 인해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고단11662사건)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채무자가 위 기간 동안 적극재산의 가액이 소극재산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위와 같은 급여송금을 통해 피고에게 위 급여 상당의 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만 하였을 뿐 위 돈을 채무자가 임의로 사용하였고 자신은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2증여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19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원고의 부인권 행상에 따라 부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액 109,378,8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이후로서 제2증여에 대한 부인권을 이 사건 소송에서 행사한다는 취지가 담긴 2020.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0. 9.부터 피고가 이행의 의무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과, 원고 보조참가인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에서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국